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송윤아 연구위원

- 자연재해, 감염병, 테러, 무역분쟁 등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결합하여 기업 휴지(조업중단)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보장공백은 심각한 수준임
 - 기업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재물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물적 손해로 인한 고정비 지출 및 수익 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임
 - 재물종합보험 내 기업휴지보험 가입건수는 1,458건으로, 매해 사업장 화재가 14,000건 이상 발생하고, 활동 기업이 625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휴지위험에 노출됨
- 9/11테러 당시 미국 기업의 피해 보상 및 지원액의 약 73%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중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9/11테러 당시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27%에 불과함
 - 9/11테러는 역대 테러 중 보험손해액이 가장 큰 사고로, 이후 기업보험에 테러면책조항이 추가되자 미국 정부 가 테러담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재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험시장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됨
-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 공되어 가입률이 높은 편이며, 정책성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함
 - 상기 국가에서는 사업장 내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휴지손해 발생이 필연적이다 보니, 물적 손해와 기업휴 지손해를 별개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최소화를 위해 정책성보험이 담보범위를 보수적으로 획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성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보장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해당국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줌
- ₹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첫째,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둘째,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코로나19사태 관련 강제폐쇄명령·공급망 중단·구매 중단에 따른 기업의 조업중단손해가 커짐에 따라,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및 수익 상실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및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보험으로는 기업휴지보험이 있으며, 통상의 보험 금 지급 조건은 ① 사업장 내 직접적인 물적 손해(Physical Damage), ②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 ③ 조업 중단의 결과 발생한 손해, ④ 수익상실 발생임
 - 통상의 기업휴지보험 지급은 물적 손해 발생여부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감염병 관련 강제폐쇄명 령에 따른 기업휴지손해의 경우 물적 손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업휴지보험 지급대상이 아님
 - 기업휴지보험에 강제폐쇄명령(Civil Authority Order) 특약이 추가되더라도, 동 특약은 인근 지역 의 물적 손해(Physical Damage) 발생을 보상의 전제조건으로 함
 - 2002~2003년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대유행으로 인해 기업휴지보험 청구 건이 급증하고 감염병이 '물적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¹⁾
 - 이후 세계 주요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에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감염 병을 기업휴지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위험으로 구체화함²⁾
- 비단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테러,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중단 등에 의한 기업휴지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가 커지고 있음
 -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공급망의 복잡화 및 글로벌화는 대형 자연재해와 보험무역 주의 확산 등의 트리거(Trigger)와 결합하여 기업휴지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음
- 본고에서는 기업휴지보험과 우리나라 기업의 휴지리스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¹⁾ 감염자가 사업장 내 집기를 만져 기업의 유형자산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경우, 이를 물적 손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²⁾ New York Times, "Coronavirus Will Cost Businesses Billions. Insurance May Not Help", 2020. 3. 5

2. 기업휴지리스크와 보험



- 기업은 화재, 자연재해, 테러행위, 감염병,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기업휴지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 및 공급망의 글로벌화와 결합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 테러행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강제 폐쇄될 경우 기업은 고정비 지출과 수익상실의 어려움을 겪게 됨
 -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공급망의 복잡화 및 글로벌화는 대형 자연재해와 보험무역주의 확산 등의 트리거와 결합하여 기업휴지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자동차부품과 HDD 공급이 중단되자 여러 국가에 소재한 완성차 제조업체와 IT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됨3)
 - 미국·중국 무역전쟁,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미국의 철강 및 자동 차 관세 부과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공급망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함
 - Allianz(2019)의 리스크 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 중단 및 기업휴지를 가장 우려함⁴⁾
 - 가장 우려하는 기업휴지리스크 트리거는 사이버공격(55%), 화재 및 폭발(46%), 자연재해(43%), 기계결함(30%), 공급망 실패(25%), 경제정책 및 제재(13%)임
- 기업휴지리스크에 대비한 기업휴지보험은 전제조건 및 담보위험에 따라 BI, CBI, NDBI로 구분할 수 있음(〈그림 1〉참조〉
 - BI(Business Interruption)보험은 화재, 폭발, 전기적·기계적 사고 등에 의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재산손 해를 입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단됨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지출액 및 상실수익을 보장함
 - 기업보험의 특성상 계약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BI보험 청구가 가능함: ① 사업장 내 직접적인 물적 손해, ②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 ③ 조업중단의 결과 발생한 손해, ④ 수익상실 발생
 - CBI(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보험은 피보험기업의 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사업장에 발생한 물적 손해로 인해 피보험기업의 조업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함
 - NDBI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업장에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ND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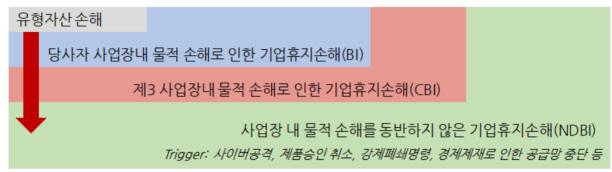
³⁾ U. 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1), "The Motor Vehicle Supply Chain: Effects of the Japanese Earthquake and Tsunami"; Haraguch, M. and Lall, U.(2014), "Flood Risk and Impacts: A Case Study of Thailand's Foods in 2001 and Research Questions for Supply Chain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⁴⁾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ity(2020), "Allianz Risk Barometer: Top Business Risks for 2019"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 손실을 보장함

- BI보험과 CBI보험은 화재, 폭발, 기계결함, 자연재해로 인한 피보험기업 또는 공급자 및 구매자의 사업장내 물적 손해로 인해 기업활동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됨
- NDBI의 트리거는 제품 면허 및 승인 취소, 생산설비 폐쇄 명령, 핵심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물리적 손실로 인한 기업휴지, 핵심 공급자의 파산, IT 중단, 사이버공격, 정치적 위험, 테러, 정전, 제품리콜, 물류·교통 중단 등이 될 수 있음

〈그림 1〉 기업의 리스크와 관리 범위



자료: Holzheu, T., Fan, I., Lechner, R., and Tamm, K.(2017), "Commercial Insurance: Innovating To Expand The Scope Of Insurability", Swiss Re Institute Sigma, No. 5

■ 최근에는 감염병, 자연재해, 테러행위, 보호무역주의, 공급망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시업장 내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 발생기능성이 커짐에 따라 CBI. NDBI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3.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장공백



가.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장공백 현황

- 손해보험회사는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함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장 내 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또는 재산종합보험의 형태로 제공함

- 기업휴지담보는 화재보험이나 기계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또는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담보, 배상 책임담보, 기계담보와 함께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함
-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에 공급자로 인한 기업휴지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 또는 공급자에게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전쟁, 소요, 테러, 핵무기 및 방사능, 적법기관의 몰수, 공공기관의 명령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지 않음
-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기관이 2014년 기준 약 92개가 있으나, 주로 재물공제나 책임공제를 중심으로 한 공제사업이 주를 이루고,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는 찾아보기 어려움
- 기업휴지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기준 1,458건으로, 동 기간 우리나라 활동기업이 625만 개(법인기업 66만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휴지보험 기업률은 미미함(〈표 1〉참조)
 - 통상 기업성보험은 담보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물적 손해를 기본다보로 하며, 이에 더해 비용손 해 또는 책임손해를 보상함
 - 예를 들어, 사업장 화재보험은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선박보험은 해상운송 중 발생된 선박의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를, 기업성종합보험은 재물손해를 기본으로 하되, 책임손해와 상해손해를 보상함
 - 2018년 기준 손해보험 내 기업성보험 계약건수는 약 440만 건으로, 공제계약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반면, 기업휴지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기준 1,458건으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건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 2018년 기준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 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함
 - 이는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는 회복하더라도 기업휴지에 따른 고정비지출이나 수익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기업휴지가능성이 높고, 공장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2019년 기준 14,574건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휴지리스크 노출도는 상당히 높음
 - 2013~2018년 기간 동안 주요국에서 발생한 1,175건의 기업휴지보험 청구건의 손해액을 사고원인 별로 살펴보면 화재 및 폭발 30%, 폭풍 21%, 용수공급차질 12%, 기계결함 5%, 홍수 4%임5)
 - 공급망 실패로 인한 기업휴지손해담보(CBI)가 재산종합보험의 BI담보에 특약으로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BI 가입률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

⁵⁾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20), "Allianz Risk Barometer 2020 - Business Interruption(Incl. Supply Chain Disruption)"

〈표 1〉일반손해보험 내 기업성보험 계약건수 및 원수보험료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화재			321	317	336	2,457	2,306	2,154
해상			2,905	2,926	2,932	6,030	6,399	5,909
기술			16	19	19	2,807	2,667	2,601
배상			925	1,123	845	8,981	9,587	10,040
종합	소계		233	245	263	13,404	13,940	14,616
	재 산 종 합	재물손해	14.1	16.6	17.2	7,824	7,857	7,763
		기계손해	5.5	5.1	5.4	634	521	558
		기업휴지손해(BI)	1.3	1.3	1.5	396	489	869
		배상책임손해	4.3	4.6	5.0	501	482	471
합계			4,399	4,630	4,396	33,678	34,898	35,318

주: 1) '기업성보험'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으로 정의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 또한 우리나라 기업은 사업장 내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기업휴지손해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됨

- 감염병이나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강제 폐쇄되어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종합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시업장내 물적 손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에 기입하고, 물적 손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에 기입하지 못하고 있음

나. 기업휴지보험 비활성화 이유

-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질의 위험집단이 구성되지 않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하다는데 있음
 - 대체로 기업보험은 계약별로 위험이 동질적이지 않고, 사고발생 빈도가 낮으나, 사고발생 시 손해규모가 크고 기업마다 위험요인 및 보장수요가 다양하여 일률적 상품운용에 한계가 있음

²⁾ 기업성 종합보험은 재산종합보험뿐만 아니라 동산종합보험, 중장비안전종합보험, 레저종합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연구 활동종사자 종합보험, 행사종합보험, 수상레저종합보험 등 종합보험으로 명명된 모든 기업성보험을 포함함 자료: 보험개발원(2019), 「2019년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

- 반면 가계보험은 피보험자가 많고, 위험이 동질적이며, 보험사고발생 빈도에 비해 손해액 등이 작기 때문에 집단별로 동일한 위험도, 가격, 보장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함
- 둘째,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기업휴지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이를 보험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임
 - 2019년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사의 기업휴지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동 위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11.3%에 불과함이
 - AXCO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자동으로 제공되어 가입률이 높은 편임7)
 - 상기 국가에서는 사업장 내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휴지손해 발생이 필연적이다 보니, 물적 손해 와 기업휴지손해를 별개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더불어 주요 국가의 기업관련 정책성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데,이는 기업휴지보험이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미국 TRIP(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프랑스 CCR(Caisse Centrale de Réassurance), 스페인 CCS(Consorcio de Compensation de Seguros), 미국 캘리포니아주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호주 ARPC(Australian Risk Pool Corporation), 덴마크 TIPNLI(Terrorism Insurance Pool for Non-Life insurance) 등은 자연재해 및 테러위험을 담보하는 정책성보험 운영기 관으로 기업의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휴지손해까지도 보장함
 -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최소화를 위해 정책성보험이 담보범위를 보수적으로 획정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정책성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보장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줌
 - 반면, 우리나라 의무보험 또는 정책성보험 등이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의 물적 손해를 보상할 뿐 휴지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음
- 셋째, 손해보험회사는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 미흡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에 소극적이며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를 제시함
 - 보험회사가 기업휴지손해에 대해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고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물건별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정확히 평가해서 손해발생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해야 함
 - 또한 업종, 기업설비의 특성, 보장물건의 규모, 기업의 위험관리 체계 등 보험계약별 특수성과 기업의 수요에 맞게 보장범위·보험금·면책범위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역량이 필요함

⁶⁾ 송윤아·한성원(2019),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보험연구원

⁷⁾ AXCO(Insurance Market Reports & Global Statistics)

- □ 그러나 오랜 세월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대신 국내외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 즉 협의요율에 의존해 왔음
 - 협의요율 적용 계약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화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성보험 종목에서 협의요율 적용계약 비중이 높음8)
 - 보험료 기준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2018년 기준 해상보험이 85.9%, 기업성 종합보험이 74.9%, 기술 보험이 82.1%, 배상책임보험이 59.1%, 화재보험 1%임⁹⁾
- 보험회사가 직접 기업의 위험을 조사·평가하지 않고 요율을 산출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 기업의 위험및 니즈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상품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자사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외 재보험사로부터 구득한 보험료가 위험 대비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4. 9/11테러와 기업의 휴지보험 의존도



- 미국 9/11테러는 역대 테러 중 보험손해액이 가장 큰 사고로, 기업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보험, 특히 기업휴지 보험의 활용도 및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¹0)
 - 9/11테러로 보험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기 이전까지 보험회사는 기업보험에서 테러위험을 담보함
- 9/11테러 관련 피해 지원·보상금의 약 51%는 기업이 기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됨
 - 9/11테러 관련 피해 지원·보상금은 2004년 기준 약 380억 달러로, 이 중 보험이 약 51%, 정부 42%, 자선단체 7%를 차지함(〈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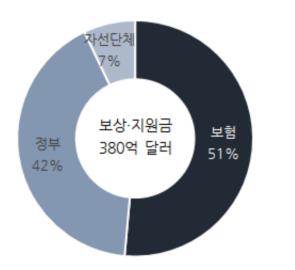
⁸⁾ 보험개발원(2019), 「2019년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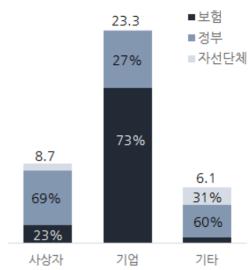
⁹⁾ 기업휴지손해담보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료 기준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2018년 기준 93.2%임

¹⁰⁾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자동으로 제공되어 가입률이 높은 편임. 다만, 각국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에 대한 상세 통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기업휴지보험 활용도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9/11테러 사례를 인용함

〈그림 2〉 9/11테러 피해 보상·지원 출처

〈그림 3〉9/11테러 피해집단별 보상·지원 출처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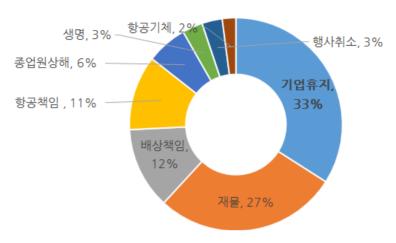




주: 〈그림 3〉의 기타는 사망 또는 부상 응급구조원, 환경적 요소, 정신적 부상, 거주자, 근로자 등을 포함함 자료: Dixon, Lloyd, and Stern, R. K.(2004), "Compensation for Losses form the 9/11 Attacks", Rand Institute for Civil Justice

-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보상금은 전체의 약 61%로, 기업에 대한 보상의 73%가 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기업의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27%에 불과함
 - 개인에 대한 지원·보상금의 70% 이상이 정부지원 또는 자선단체 구호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임 (〈그림 3〉참조)
- 보험종목별로는 기업휴지보험의 손실액 비율이 33%로 가장 높으며, 이로부터 미국 기업들이 재물보험에 더해 기업 휴지보험까지 포괄적인 보장을 추구함을 알 수 있음
 - 보험종목별 손실액 비율은 기업휴지 33%, 재물 27%, 배상책임 12%, 항공책임 11%, 종업원 상해 6%, 생명 3%, 행사 취소 3%, 항공기체 2% 순임(〈그림 4〉 참조)
 - 당시 미국에서는 ① 사업장 건물이나 내용물 등의 물적 손해, ② 사업장 접근 금지와 같은 정부명령, ③ 전력·가스·용수 등의 차단, ④ 공급자 및 구매자의 조업중단 등으로 피보험기업이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고정비 지출과 상실 수익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이 판매되었음

〈그림 4〉 9/11테러 보험종목별 보험손해액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 9/11테라는 이후 보험회사가 기업보험에 테러면책조항을 추가하자 미국 정부가 테러담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재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험사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됨
 - 9/11테러 이후 보험회사는 테러위험을 재평가하고 주보험당국에 기업보험 약관에 테러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02년까지 45개주가 이를 승인함
 - 이에 따라 테러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지자 정부는 2002년 테러위험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에 근거하여 테러위험보험프로그램(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을 만들어 테러보험 손실 총액이 500만 달러 초과하면 연방정부가 보험회사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경우 보험을 통한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1차적인 물적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물적 손해로 인한 기업휴지손실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필요성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절실히 공감함

5. 제언



■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노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휴지리스크는 기업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기업유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비한 재물보험 가입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스크관리로, 화재 등으로 사업장 내 물적 손해 발생 시 조업중단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대형재난 시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물적 손해를 동반한 휴지손해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보험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대형 화재 및 폭발,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정부는 저리융자·보증·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지원해 왔음
 -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 보험가입 의무화 또는 보험료 지원 및 재 보험 공급 등을 통한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사후지원금을 줄이고 자율적 방재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를 통해 동질적인 위험집단(Pool)의 규모가 커진다면,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고 위험집단화를 통해 보다 낮은 보험료 제시가 가능할 것임
- 둘째,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장위험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기업 휴지보험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제공해야 함
 - 특정 위험에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는 동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되, 보험가입한도를 낮게 설정하여 보험회사의 손실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CBI에 대해서도 기업규모, 업종, 공급자 및 구매자 소재지에 따라서 보장한도를 달리하거나 공급자 및 구매자 소재지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자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여 CBI는 직접 공급자 및 구매자로 제한하되, 기명 공급자 및 구매자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3,400만 달러, 무기명 공급자 및 구매자인 경우 7백만 달러로 제한함¹¹⁾
 - 캐나다의 경우도 공급자 및 구매자로 인한 기업휴지보험은 주로 북아메리카 소재 공급자 및 구매자 로 제한함
 -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보험영역에서 벗어나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도 상품 개발을 시도해야 함
 - 2014년 Ebola 발생 당시, 미국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해 강제폐쇄명령이 내려져 조업이 중단된 경우

¹¹⁾ 중소기업의 경우 무기명 공급자에 대한 보장한도를 3.5백만 달러, 호주내 공급자로 제한함

- 물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업휴지보험이 판매됨12)
- 최근 미국 ISO(Insurance Service Provider)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강제폐쇄명령으로 인한 기업 휴지손해를 보장하는 참조약관(Endorsement)을 발표함¹³⁾
- 셋째,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의 리스크는 전통적인 보험에서 다룬 리스크와 달리, 과거 경험데이터와 사고의 우연성이 충분치 않고 손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보험산업은 2001년 9/11테러, 2002년 SARS 감염병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겪은 이후 동 위험을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거나 약관에 관련위험에 대한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45개주가 기업보험 담보위험에서 테러위험을 삭제한 바 있음
 - 2002~2003년 SARS 대유행 이후 기업휴지보험 약관에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면책조항을 추가함 kiqi

¹²⁾ 이는 'Ebola Regulatory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로 판매됨(Business Insurance(2014. 10. 15), "Brokers Launch Business Interruption Cover For Ebola, Other Pandemics") 기존 기업휴지보험에 강제폐쇄명령(Civil Authority Order) 특약을 추가하더라도, 통상 동 특약은 사업장 인근의 물적 손해 발생이 보상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감염병처럼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강제폐쇄명령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보험금 청구조건이 성립되지 않음

¹³⁾ Christine G. Barlow(2020. 2. 10), "Coronavirus Spurs ISO To Provide Business Interruption Endorsement", PropertyCasualty360